

고속국도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우리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종합기술제안서를 <u>평가</u>하기 위한 세부 <u>평가</u>기준이다. 개정 시 우리공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u>평가</u>에 필요한 자료를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자기평가서 포함)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u>평가</u>서류를 각각 별권으로 작성하여 공문 및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u>평가</u>는 서류 제출마감 시간 내에 우리공사에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u>평가</u>한다. ※ 자기평가서 : 2단계 평가 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정량평가 항목, 통합평가 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에 한하여 작성 4. 핵심전문가가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사유가 된다. 가. <u>핵심전문가를 입찰공고 중인 2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우리공사가 입찰공고한 건에 한함)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u> <u>-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 이전에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u> 나. <u>핵심전문가가 사망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u> <u><신 설></u> 다. 그 밖에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핵심 및 일반전문가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u>핵심전문가 중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포함)은 3개사 이내 소속 기술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구 책임기술인(공구 참여기술인 포함)은 공구 당 1개사 소속 기술인을</u> 원칙으로 한다. 5. 핵심전문가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6.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계산 및 <u>평가</u>기준일은 <u>입찰공고일을</u>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째 자리까지로 한다. 소수점 처리는 <u>평가</u>항목별, <u>평가</u>요소별 등 모든 계산시 동일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우리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종합기술제안서를 <u>심사</u>하기 위한 세부 <u>심사</u>기준이다. 개정 시 우리공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u>심사</u>에 필요한 자료를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자기평가서 포함)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u>심사</u>서류를 각각 별권으로 작성하여 공문 및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u>심사</u>는 서류 제출마감 시간 내에 우리공사에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u>심사</u>한다. ※ 자기평가서 : 2단계 평가 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정량평가 항목, 통합평가 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에 한하여 작성 3. 핵심전문가가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사유가 된다. 가. <u>핵심전문가를 입찰공고 중인 2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우리공사가 입찰공고한 건에 한함)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한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 이전에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u> 나. <u>핵심전문가가 사망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u>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퇴직, 사망, 질병 등) 및 우리공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우리공사가 계약취소(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핵심 및 일반전문가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u>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시 핵심전문가 중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고, 일반전문가 중 같은 공구 내 배치되는 안전전담기술인의 소속 회사는 동일한것을</u> 원칙으로 한다. 5. 핵심전문가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6.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계산 및 <u>심사</u>기준일은 <u>입찰공고일(종합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뿐만아니라 참여기술인 자격·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u>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째 자리까지로 한다. 소수점 처리는 <u>심사</u>항목별, <u>심사</u>요소별 등 모든 계산시 동일 적용한다.	용어 변경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평가→심사) 계약취소 사유 명확화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PQ 세부평가기준 준용) 기술인 구성 변동에 따른 참여사 제한규정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운영 가이드라인 개선, 건설처-2948("26.7)) 문구 구체화

현행					개정(안)				비고							
7. <u>평가</u>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7. <u>심사</u>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배점 변경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4. 배점 변경 (4-1. 0.2점 → 0.3점, 4-2. 0.4점 → 0.6점, 4-3. 0.6점 → 0.6점, 4-4. 신설(1.0점)) 6. 배점 변경 (3.0점 → 1.5점) 7. 배점 변경 (1.5점 → 2.0점) 8. 배점 변경 (1.5점 → 1.0점) 9. 배점 변경 (9.0점 → 10.0점) 10. 배점 변경 (6.0점 → 5.0점) 11. 배점 변경 (10.0점 → 5.0점) 12. 배점 변경 및 신설 (4.0점 → 5.0점) 13. 항목 신설 (13-1. 신설(3.0점), 13-2. 신설(2.0점))							
가.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u>평가</u> 시 '나.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u>평가</u> 기준'을 준용하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평가항목 : 관리역량, 기술역량,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u>심사</u> 시 '나.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u>심사</u> 기준'을 준용하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평가항목 : 관리역량, 기술역량,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아래 표는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u>평가</u> 시 적용한다.					나. 아래 표는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u>심사</u> 시 적용한다.											
대분류		중분류		평가방법	공구 책임 기술인 포함	공구 책임 기술인 제외	대분류			중분류	배 점					
총 계 (정량 33.5점. 정성 66.5점)					100.0		100.0			총 계 (정량 36점. 정성 64점)					100.0	
관리역량			소 계		2.0		2.0			관리역량			소 계		2.0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 성		0.5		0.5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 성		0.5	
	2.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 성		0.5		0.5				2.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 성		0.5	
	3. 신용도 계				1.0		1.0				3. 신용도				1.0	
	3-1. 재정상태 건설도		정 량		0.3		0.3				3-1. 재정상태 건설도		정 량		0.3	
	3-2. 벌 점		정 량		0.5		0.5				3-2. 벌 점		정 량		0.5	
	3-3. 영업(업무)정지		정 량		0.2		0.2				3-3. 영업(업무)정지		정 량		0.2	
기술역량			소 계		5.0		5.0			기술역량			소 계		5.0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계				1.0		1.0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2.5	
	4-1. 기술개발 실적		정 량		0.2		0.2				4-1. 기술개발 실적		정 량		0.3	
	4-2. 기술개발 활용실적		정 량		0.4		0.4				4-2. 기술개발 활용실적		정 량		0.6	
	4-3. 투자실적		정 량		0.4		0.4				4-3. 투자실적		정 량		0.6	
	<신설>										4-4. 핵심기술인 현황		정 성		1.0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 성		1.0		1.0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 성		1.0	
6.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정 량		3.0		3.0		6.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정 량		1.5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3.0		3.0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3.0		
	7. 양적평가		정 량		1.5		1.5			7. 양적평가		정 량		2.0		
	8. 질적평가		정 성		1.5		1.5			8. 질적평가		정 성		1.0		
사업 수행방법			소 계		25.0		25.0		사업 수행방법			소 계		20.0		
	9.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 성		9.0		9.0			9.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 성		10.0		
	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정 성		6.0		6.0			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 성		5.0		
	11.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 성		10.0		10.0			11.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 성		5.0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소 계		10.0		10.0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소 계		10.0		
	12. 작업계획		정 성		4.0		4.0			12. 작업계획				5.0		
	<신설>		-		-		-			12-1. 작업계획의 적정성		정 성		3.0		
	<신설>		-		-		-			12-2. 민원대응 및 안전사고 관리능력		정 성		1.0		
	<신설>		-		-		-			12-3. 위기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정 성		1.0		
	13. 직원투입 규모 및 전략 <삭제>		정 성		5.0		5.0			13. 직원 투입계획(교체빈도) <신설>				5.0		
	14. 현장업무 수행직원 투입계획 <삭제>		정 량		1.0		1.0			13-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신설>		정 량		3.0		
	<신설>									13-2. 참여기술인 <신설>		정 량		2.0		

현행					개정(안)					비고	
전문가 역량	소계		55.0	55.0	전문가 역량	소계		55.0	14. 배점 조정 및 신설 (14-1. 10.0점 → 8.0점, 14-2. 11.0점 → 12.0점, 14-3. 신설(4.0점)		
	15.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26.0	26.0		14.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24.0			
	15-1. 사업 책임기술인		10.0	15.0		14-1. 사업 책임기술인		8.0			
	- 경력	정량	5.0	7.0		- 경력	정량	4.0			
	- 직무	정량	4.0	7.0		- 직무	정량	3.0			
	- 교육훈련	정량	1.0	1.0		- 교육훈련	정량	1.0			
	- 기술자격	정량	Pass/Fail	Pass/Fail		- 기술자격	정량	Pass/Fail			
	15-2. 분야별 책임기술인		11.0	11.0		14-2. 분야별 책임기술인		12.0			
	- 경력	정량	6.0	6.0		- 경력	정량	7.0			
	- 직무	정량	4.0	4.0		- 직무	정량	4.0			
	- 교육훈련	정량	0.5	0.5		- 교육훈련	정량	0.5			
	- 기술자격	정량	0.5	0.5		- 기술자격	정량	0.5			
	15-3. 공구 책임기술인		5.0	-		14-3. 안전총괄기술인		4.0			
	- 경력	정량	2.0	-		- 경력	정량	2.0			
- 직무	정량	2.0	-	- 직무	정량	1.0					
- 교육훈련	정량	0.5	-	- 교육훈련	정량	0.5					
- 기술자격	정량	0.5	-	- 기술자격	정량	0.5					
16.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정성	14.0	14.0	15.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정성	6.0	15. 배점 조정 (14.0점 → 6.0점)		
17.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	15.0	15.0	16.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	25.0		16. 배점 조정 (15.0점 → 25.0점)	
<신설>		-	-	-	16-1. 사업 책임기술인 인터뷰		정성	7.0	17. 항목신설(5.0점)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신설>		-	-	-	16-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정성	4.5			
<신설>		-	-	-	16-3.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정성	4.5			
<신설>		-	-	-	16-4.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정성	4.5			
<신설>		-	-	-	16-5. 안전총괄기술인 인터뷰		정성	4.5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소계		5.0	19. 항목신설(+1.0점)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신설>			17. BIM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정성	5.0				
	<신설>			17-1. BIM 전문인력 구성		정량	1.0				
	<신설>			17-2.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		정성	4.0				
사회적 책임	18. 인력고용 (가점)		정량	최대 +2.0	최대 +2.0	사회적 책임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정량	최대 +1.0	21. 항목신설(-0.5점)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신설>						19.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가점)		정량	최대 +1.0	
	19. 공정거래 (감점)		정량	최대 -2.0	최대 -2.0		20. 공정거래 (감점)		정량	최대 -2.0	
<신설>	<신설>					계약 신뢰도	21. 증대한 건설사고 발생 (감점)		정량	최대 -0.5	
평가 관련 신뢰도	20.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정량	최대 -10.0	최대 -10.0	평가 관련 신뢰도	2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정량	최대 -10.0	
	20-1.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정량	최대 -10.0	최대 -10.0		22-1.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정량	최대 -10.0	
	20-2. 제안서 작성 위반		정량	최대 -3.0	최대 -3.0		22-2. 제안서 작성 위반 등		정량	최대 -3.0	

현행				개정(안)				비고				
8. 평가 항목 중 정량적 항목은 절대평가, 정성적 항목은 상대평가로 시행하며, 정량적 항목의 평가 점수는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 및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평가 위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의 평가 점수는 기술심사 주관부서에서 위촉한 각 평가 위원이 기술제안 내용 및 핵심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산정한다.				8. 심사 항목 중 정량적 항목은 절대평가, 정성적 항목은 상대평가로 시행하며, 정량적 항목의 심사 점수는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 및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심사 위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의 심사 점수는 기술심사 주관부서에서 위촉한 각 심사 위원이 기술제안 내용 및 핵심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산정한다.				평가항목 신설 및 삭제에 따른 변경				
9.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공동도급시(공동이행방식) 평가 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9.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공동도급시(공동이행방식) 심사 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정방법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심사점수 산정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관리역량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별 점		(사업자)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기술인) 단순 합산 평가					별 점		(사업자)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기술인) 단순 합산 평가	
		영업(업무)정지							영업(업무)정지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기술개발 실적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기술개발 실적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기술개발 활용실적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기술개발 활용실적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투자실적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투자실적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적평가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적평가		지분율에 의한 실적합산 후 평가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현장업무 수행직원 투입계획		단순 합산 평가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직원 투입계획 (교체빈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기술인	
전문가 역량		핵심전문가 등급, 경력, 직무 및 교육훈련		단순 합산 평가		전문가 역량			핵심전문가 등급, 경력, 직무 및 교육훈련		단순 합산 평가	
<신설>		-		-		스마트 건설기술			BIM 전문인력 구성		단순 합산 평가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사회적 책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신설>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가점)		단순 합산 평가	
		공정거래 (감점)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공정거래 (감점)		평가후 지분율에 의한 점수합산	
<신설>		-		-		계약 신뢰도			중대한 건설사고(감점)		단순 합산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감점)		단순 합산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감점)		단순 합산 평가	
		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		단순 합산 평가				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		단순 합산 평가		
10.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총점의 경우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한다.				10.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항목별 차등평가, 심사 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총점의 경우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한다.				문구 구체화 및 명확화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는 정성평가 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는 ‘S’등급을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항목별 정성평가 배점의 10%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적용계수 및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첨부1]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는 정성평가 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는 ‘S’등급을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항목별 정성평가 배점의 10%만큼 차감된 계수가 적용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고 및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첨부1]과 같다.								
<등급별 적용계수>				<등급별 적용계수>								
등급		S		A		B		C		D		
적용계수		1		0.9		0.8		0.7		0.6		

현 행	개 정(안)	비 고
나.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부여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는 획득한 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부터 차례로 정성평가 배점의 5%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하는 원칙으로 한다. (각 평가위원은 업체별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평가한다.) 다.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 부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결과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는 해당 점수를 그 업체의 최종 기술점수로 하고, 차순위 업체에는 총점의 1%만큼 차감된 점수를 최종 기술점수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정성 및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 (전문가역량→사업수행 방법→작업 및 직원투입계획→기술적이행능력평가)가 높은 업체를 상위 순위로 한다. 1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정량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업무중첩도 평가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상 오류나 누락사항 확인시 해당 기술인을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한다. 14. 업무중첩도 평가 시 참여기술인의 타 건설엔지니어링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간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심사위원별 차등평가는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는 획득한 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부터 차례로 정성평가 배점의 5%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하는 원칙으로 한다. (각 심사위원은 업체별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평가한다.) 다.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 부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결과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는 해당 점수를 그 업체의 최종 기술점수로 하고, 차순위 업체에는 순위별로 총점의 1%만큼 차감된 점수를 최종 기술점수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전문가역량→사업수행 방법→작업 및 직원투입계획→기술적이행능력평가→스마트건설기술)가 높은 업체를 상위 순위로 한다. 1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정량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상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실격 처리한다. ※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별첨#1] 업무중첩도 신고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14.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배치되는 참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및 설계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간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문구 구체화 평가항목 신설에 따른 내용변경 문구 구체화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 세부평가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비 고
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u>평가</u>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u>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u> 한다.	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해당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실격 처리 한다.	문구 수정
1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u>평가</u>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u>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며 이 경우</u>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국토부)”을 적용할 수 있다.	1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심사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국토부)”을 적용할 수 있다.	문구 수정
17. < 신 설 >	17. 입찰 참여사는 종합기술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별첨#4 참고	
18. < 신 설 >	18.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 기술인은 핵심전문가로 한정하며 그 외 일반전문가는 모든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과업내용서 별첨#1 상세내용 참고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대상 기술인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II. 세부 평가 기준		II. 세부 심사 기준		
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 기준		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심사 기준		
평가 방법		심사 방법		
평가 공통 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함), 기초자치단체(시에 한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및 설계엔지니어링 실적을 말한다.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도로 : 4차로 이상으로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 제12조 일반국도,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지선, 제14조 특별시도, 광역시도, 제15조 지방도, 제16조 시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a)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및 설계속도 100km/hr이상인 도로 : 1.0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도로 : 0.8 - 기타 도로시설(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이상 등급) : 0.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β)는 참여사(β₁) 및 핵심전문가별(β₂ : 사업 책임기술인, β₃ : 분야별 책임기술인, β₄ : 공구 책임기술인) 다르게 적용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행내용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타절 준공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은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평가 공통 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함), 기초자치단체(시에 한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및 설계엔지니어링 실적을 말한다.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도로 : 4차로 이상으로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 제12조 일반국도,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지선, 제14조 특별시도, 광역시도, 제15조 지방도, 제16조 시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a)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및 설계속도 100km/hr이상인 도로 : 1.0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도로 : 0.8 - 기타 도로시설(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이상 등급) : 0.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β)는 참여사(β₁) 및 핵심전문가별(β₂ : 사업 책임기술인, β₃ : 분야별 책임기술인, β₄ : 안전총괄기술인) 다르게 적용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행내용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타절 준공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은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문구수정 (정부조직법 개편) 오타수정 <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2.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배점 비중 단순조정 ("4.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배점 비중 단순조정)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 (1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신설)) 평가항목 세분화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기술보유 (10점)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점수	1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배점}}$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기술보유 (10점)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점수	10.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배점}}$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2.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25점)	9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과업수행단계별) 예상 문제점, 리스크 및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경험(설계엔지니어링 참여 등)을 기반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에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BIM 전면설계 건설사업의 경우 적용		2.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20점)	10.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과업수행단계별) 예상 문제점, 리스크 및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 < 삭제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운영방법	6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 참여기술자 임금보호 방안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운영방법	5.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 참여기술자 임금보호 방안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5. 작업계획	4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및 과업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5. 작업계획	소계	(5점, 정성평가)	
					5-1. 작업계획의 적정성	3.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및 과업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자격, 경력, 직원역량, 인력투입 분포 및 S커브, 투입량 등) - 기술인 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5-2. 민원대응 및 안전 사고 관리능력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본사 지원 사항 필수 포함) - 작업현장 민원 식별 및 대응 체계 적정성 - 중대재해 등 작업현장 안전사고 관리 체계 및 사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적정성	
					5-3. 위기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본사 지원 사항 필수 포함) - 대외적 요인(재난, 부도 등)으로 인한 위기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성·운영(위기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적정성 - 매뉴얼 및 교육훈련 체계, 외부기관과 협력 체계 등 적정성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평가항목 삭제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6. 직원투입 규모 및 전략	5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자격, 경력, 직원역량, 인력투입 분포 및 S커브, 투입량 등) - 기술인 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 삭제 >		< 삭제 >												
	7. 현장업무 수행직원 투입계획	1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 ≥ 0 ○ 현장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공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구 책임기술인은 만 60세, 책임 기술인 외는 만 5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12월)초과 당 0.2점씩 감점		< 삭제 >		< 삭제 >												
	< 신설 >				6. 직원 투입계획 (교체빈도)		(5점, 정량평가)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 세부평가기준 준용)										
			< 신설 >	6-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3.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A ○ 평가내용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table><tr><td>교체빈도율 (%)</td><td>5% 미만</td><td>5% 이상 10% 미만</td><td>10% 이상 15% 미만</td><td>15% 이상 20% 미만</td><td>20% 이상</td></tr><tr><td>적용계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로 판단하지 않음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적용계수 (A)	1.0	0.9	0.8	0.7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6-2. 참여기술인	2.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 ≥ 0 ○ 평가내용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엔지니어링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 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로 판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안)			비 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심사항목		심사방법	
전문가 역량 (55점)	8.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 경력평가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전문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직무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 핵심전문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 범위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공사 및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35시간) ○ < 신 설 >	전문가 역량 (55점)	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 경력평가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전문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직무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 핵심전문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 범위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공사 및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35시간)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기술인 등급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인 등급이 해당 조건에 미달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양적평가를 “0”점 처리	기술인 등급 평가내용 구체화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전문가 역량 (55점)	8.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8-1. 사업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10점 (15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7-1. 사업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8.0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5점 (7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분</td><td>20년 이상</td><td>~18년 이상</td><td>~16년 이상</td><td>~14년 이상</td><td>14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구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경력	4.0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분</td><td>20년 이상</td><td>~18년 이상</td><td>~16년 이상</td><td>~14년 이상</td><td>14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 간진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직무분야 중 상기 명시된 전문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전문분야외”로 인정	구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직무	4점 (7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B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참여기간(월)=Σ{ 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α × β ₂ } * α: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₂ : 사업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직무	3.0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B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참여기간(월)=Σ{ 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α × β ₂ } * α: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₂ : 사업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교육 훈련	1점 (1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교육 훈련	1.0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Pass Fail		○ 사업 책임기술인 등급은 특급, 해당기술사가 없는 경우 양적평가 10점(15점) “0”점 처리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 자격	Pass Fail		○ 사업 책임기술인 등급은 특급, 해당기술사가 없는 경우 양적평가 8.0점 “0”점 처리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 () : 공구 책임기술인을 제외하고 발주하는 경우 적용					* < 삭제 >					배점기준 변경 (공구책임기술인 폐지) 사업책임기술인 검칙에 따른 “전문분야 및 전문분야외” 인정범위 명확화 사업책임기술인 검칙에 따른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제한																																			

* () : 공구 책임기술인을 제외하고 발주하는 경우 적용

*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배점 조정													
전문가 역량 (55점)	8.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전문분야외 인정범위” 명확화												
	8-2. 분야별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11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6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text{배점} \times A))/n$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직무	4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text{배점} \times B))/n$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 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기간(월)= $\Sigma\{\text{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times \alpha \times \beta_3\}$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_3 : 분야별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td><td>1.0</td></tr><tr><td>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8</td></tr><tr><td>타당성, 설계VE</td><td>0.6</td></tr></table>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1.0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8	타당성, 설계VE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1.0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8																				
타당성, 설계VE	0.6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text{배점} \times C))/n$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 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text{배점} \times D))/n$																	
				<table><tr><td>구 분</td><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적용계수(D)</td><td>1.0</td><td>0.6</td><td>0.2</td></tr></table>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 기술사 인정 자격분야 : (도로) 도로 및 공항 / (토질)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 (구조) 토목구조																	
				- 기사·산업기사 인정 자격분야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별표 1의 “토목” 직무분야 내 기사 및 산업기사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공구 책임기술인 평가항목 삭제															
전문가 역량 (55점)	8.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8-3. 공구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5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2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sum \text{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text{배점} \times A)/n$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직무	2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sum \text{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text{배점} \times B)/n$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 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기간(월)= $\sum \{ \text{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times \alpha \times \beta_i \}$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_i : 공구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td><td>1.0</td></tr><tr><td>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1.0	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1.0																					
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sum \text{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text{배점} \times C)/n$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 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공구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sum \text{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text{배점} \times D)/n$ <table><tr><td>구 분</td><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적용계수(D)</td><td>1.0</td><td>0.6</td><td>0.2</td></tr></table>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 삭제 >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안전총괄기술인 평가항목 신설																
	전문가 역량 (55점)	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7-3. 안전 총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4.0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2.0점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배점×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정량	<table><tr><td>구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평가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직무분야별 전문분야 인정범위																					
직무	1.0점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배점×B)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기간(월)= Σ{ 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α×β ₄ }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₄ : 안전총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table><tr><td colspan="5">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감독, 안전관리</td><td>1.0</td></tr><tr><td colspan="5">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td><td>0.8</td></tr><tr><td colspan="5">설비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감독, 안전관리					1.0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					0.8	설비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감독, 안전관리					1.0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					0.8																	
설비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배점×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안전총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배점×D)																
					<table><tr><td>구분</td><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적용계수(D)</td><td>1.0</td><td>0.6</td><td>0.2</td></tr></table> - 기술사 인정 자격분야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 기사·산업기사 인정 자격분야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별표 1의 “안전관리” 직무분야 내 기사 및 산업기사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 신 설 >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전문가 역량 (55점)	9.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14점 정성 평가	전문가 역량 (55점)	8.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6.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 최신 공사·품질·안전 관리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 삭제 > 문구 수정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 (1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신설))
	10. 핵심전문가 인터뷰	15점 정성 평가		9. 핵심전문가 인터뷰	소계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25점,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분화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9.1. 사업책임기술인 인터뷰	9.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9.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9.3.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9.4.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9.5. 안전총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스마트 건설기술 (5점)	1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소계	(1점, 정량평가 / 4점, 정성평가)									
		10-1. BIM 전문인 력 구성	1.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									
				○ 전문인력 구성									
				<table><tr><td>BIM전문가 비율*</td><td>40%이상</td><td>35%이상</td><td>30%이상</td><td>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BIM전문가 비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적용계수(A)	1.0
BIM전문가 비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10-2. BIM 등 스마트 건설기 술 활용 및 역량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사업관리에 활용한 사례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특성 등을 고려한 활용 계획										
			- 활용 사례 : SOC분야(건축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하천 등 선형사업)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대표 1건(진행중인 사례 인정)										
			- 활용 계획 : 활용 경험 등을 통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 기법·창의적 아이디어·맞춤형 스마트 기술 등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문구 수정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사회적 책임	11. 인력고용 (가점)	+2점 정량 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최대 +2점) <table><tr><th>신규 고용율</th><th>1%이상</th><th>2%이상</th><th>3%이상</th></tr><tr><th>가 점</th><td>1.0</td><td>1.5</td><td>2.0</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사회적 책임	11. 인력고용 (가점)	+1.0점 정량 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최대 +1점) <table><tr><th>신규 고용율</th><th>3%이상</th><th>2%이상</th><th>1%이상</th></tr><tr><th>가 점</th><td>1.0</td><td>0.8</td><td>0.6</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 신 설 >			12.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1.0점 정량 평가	○ 젊은기술인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최대 +1점) <table><tr><th>참여비율</th><th>5%이상</th><th>3%이상</th><th>1%이상</th></tr><tr><th>가 점</th><td>1.0</td><td>0.8</td><td>0.6</td></tr></table> - 참여 비율 = {Σ(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이 5년 미만 이거나 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기술인 수)/ Σ(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35세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 미적용	참여비율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참여비율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 신 설 >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문구 삭제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사회적 책임	12. 공정거래 (감점)	-2점 정량 평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최대 -2점) <table><tr><th>행위유형</th><th>조치정도</th></tr><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tr><td>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table> - 공정거래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 (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함 -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 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도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사회적 책임	13. 공정거래 (감점)	-2점 정량 평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최대 -2점) <table><tr><th>행위유형</th><th>조치정도</th></tr><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tr><td>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table> - 공정거래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 (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함 - < 삭 제 >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 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도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심사방법																									
평가 관련 신뢰도	13. 평가관련 신뢰도 (감점)	-10점 정량 평가	○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14.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10.0점 정량 평가	○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13-1.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우려사항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td><td>당해평가</td></tr><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td><td>당해평가</td></tr><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13-2. 제안서 작성 위반		○ 감점점수 ≤ 3.0점 ○ 감점항목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 : 1페이지당 0.1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등)] : 1페이지당 0.1점 -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0.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페이지당 0.1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페이지당 0.1점 ○ <신설>		14-2. 제안서 작성 위반		○ 감점점수 ≤ 3.0점 ○ 감점항목(정량평가 시)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 : 1장당(단면) 0.1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등)] : 1장당 0.1점 -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1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1점 ○ 감점항목(정성평가 시) <table><tr><th>감점사유</th><th>위반 횟수</th><th>감점</th></tr><tr><td rowspan="3">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td><td>1회</td><td>0.5점</td></tr><tr><td>2회</td><td>1.0점</td></tr><tr><td>3회 이상</td><td>2.0점</td></tr><tr><td rowspan="3">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td><td>1회</td><td>0.5점</td></tr><tr><td>2회</td><td>1.0점</td></tr><tr><td>3회 이상</td><td>2.0점</td></tr></table>	감점사유	위반 횟수	감점	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감점사유	위반 횟수	감점																													
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감점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현행		개정(안)		비고
2.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2.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평가 방법		심사 방법		
평가 공통 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함), 기초자치단체(시에 한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및 설계엔지니어링 실적을 말한다.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도로 : 4차로 이상으로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 제12조 일반국도,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지선, 제14조 특별시도, 광역시도, 제15조 지방도, 제16조 시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α)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및 설계속도 100km/hr이상인 도로 : 1.0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도로 : 0.8 - 기타 도로시설(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이상 등급) : 0.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β)는 참여사(β₁) 및 핵심전문가별(β₂ : 사업 책임기술인, β₃ : 분야별 책임기술인, β₄ : 공구 책임기술인) 다르게 적용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행내용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타절 준공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은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평가 공통 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함), 기초자치단체(시에 한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및 설계엔지니어링 실적을 말한다.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도로 : 4차로 이상으로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 제12조 일반국도,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지선, 제14조 특별시도, 광역시도, 제15조 지방도, 제16조 시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α)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및 설계속도 100km/hr이상인 도로 : 1.0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도로 : 0.8 - 기타 도로시설(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이상 등급) : 0.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β)는 참여사(β₁) 및 핵심전문가별(β₂ : 사업 책임기술인, β₃ : 분야별 책임기술인, β₄ : 안전총괄기술인) 다르게 적용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행내용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타절 준공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은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문구수정 (정부조직법 개편) 오타수정 핵심전문가 구성 변경 (공구책임(폐지), 안전총괄(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관리역량 (2점)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점 정성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 및 운영체계 등의 적정성 -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 품질 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 적정성 -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기술인 변경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관리역량 (2점)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점 정성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 및 운영체계 등의 적정성 -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 품질 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 적정성 -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기술인 변경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2. 사업관리 운영체계	0.5점 정성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부서(분야) 운영 방안 적정성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 -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비용, 일정, 계약, 리스크 등) - 과업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 시스템의 적정성				2. 사업관리 운영체계	0.5점 정성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부서(분야) 운영 방안 적정성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 -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비용, 일정, 계약, 리스크 등) - 과업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 시스템의 적정성																																										
	3. 신용도	소계	(1점, 정량평가)				3. 신용도	소계	(1점, 정량평가)																																										
	3-1. 재정상태 건실도	0.3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 ○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용계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회사채</td><td>BBB- 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 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 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7</td><td>0.0</td></tr></table>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 가지를 인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9	0.7	0.0		3-1. 재정상태 건실도	0.3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 ○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용계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회사채</td><td>BBB- 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 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 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7</td><td>0.0</td></tr></table>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 가지를 인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9	0.7	0.0	문구 수정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 평가기준 준용)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9	0.7	0.0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9	0.7	0.0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관리 역량 (2점)	3. 신용도	소계	(1점, 정량평가)	관리 역량 (2점)	3. 신용도	소계	(1점, 정량평가)																												
	3-2. 별점	0.5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A) × 0.1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시는 별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의 별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합산별점 합계에 따른 감점점수(A)<table><tr><th>합산별점</th><th>감점되는 점수(점)</th></tr><tr><td>1점 이상 2점 미만</td><td>0.2</td></tr><tr><td>2점 이상 5점 미만</td><td>0.5</td></tr><tr><td>5점 이상 10점 미만</td><td>1</td></tr><tr><td>10점 이상 15점 미만</td><td>2</td></tr><tr><td>15점 이상 20점 미만</td><td>3</td></tr><tr><td>20점 이상</td><td>5</td></tr></table>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2. 별점	0.5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A) × 0.1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시는 별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의 별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합산별점 합계에 따른 감점점수(A)<table><tr><th>합산별점</th><th>감점되는 점수(점)</th></tr><tr><td>1점 이상 2점 미만</td><td>0.2</td></tr><tr><td>2점 이상 5점 미만</td><td>0.5</td></tr><tr><td>5점 이상 10점 미만</td><td>1</td></tr><tr><td>10점 이상 15점 미만</td><td>2</td></tr><tr><td>15점 이상 20점 미만</td><td>3</td></tr><tr><td>20점 이상</td><td>5</td></tr></table>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3. 영업(업무) 정지	0.2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0.2 × A × 0.1) ≥ 0 - 영업(업무)정지(A)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업무)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 A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정수로 함	3-3. 영업(업무) 정지	0.2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0.2 × A × 0.1) ≥ 0 - 영업(업무)정지(A)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업무)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 A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정수로 함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점, 정량평가)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5점, 정량평가) / (1.0점 정성평가)																																													
	4-1. 기술개발 실적	0.2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sum (\text{건당 } 0.1 \times A \times B) \leq 0.2\text{점}$ ○ 개발실적은 도로분야* 건설 및 설계에 한함 * 토공, 교량, 터널, 비탈면, 포장, 방음벽, 배수, 부대시설 (도로안전시설, 표지판 등) 등 도로에 관련된 사항 ○ A: 기술 등급별 적용계수 <table><tr><td>구분</td><td>건설신기술</td><td>특허</td><td>실용신안</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5</td><td>0.25</td></tr></table> ○ B: 특허등록결정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는경우에만 인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실적 인정 조건은 활용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구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5	0.2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0.3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sum (\text{건당 } 0.15 \times A \times B) \leq 0.3\text{점}$ ○ 개발실적은 도로분야* 건설 및 설계에 한함 * 토공, 교량, 터널, 비탈면, 포장, 방음벽, 배수, 부대시설 (도로안전시설, 표지판 등) 등 도로에 관련된 사항 ○ A: 기술 등급별 적용계수 <table><tr><td>구분</td><td>건설신기술</td><td>특허</td><td>실용신안</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5</td><td>0.25</td></tr></table> ○ B: 특허등록결정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는경우에만 인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실적 인정 조건은 활용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구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5	0.2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구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5	0.2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구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5	0.2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점, 정량평가)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5점, 정량평가) / (1.0점 정성평가)																																																																																			
	4-2. 기술개발 활용실적	0.4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sum (\text{배점} \times A \times B \times C) \leq 0.4\text{점}$ ○ A: 건설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실적에 따른 인정 적용계수 <table><tr><td>실적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B: 기술 등급별 적용계수 <table><tr><td>구 분</td><td>건설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6</td><td>0.3</td></tr></table> ○ C: 특허 등록결정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특허는 존속기간 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 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실용신안은 존속기간 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특허는 최대 0.1점까지 인정 ○ 활용실적 인정 범위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인정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적용계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0.6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sum (\text{배점} \times A \times B \times C) \leq 0.6\text{점}$ ○ A: 건설신기술, 도공기술마켓, 특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실적에 따른 인정 적용계수 <table><tr><td>실적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3이상</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B: 기술 등급별 적용계수 <table><tr><td>구 분</td><td>건설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r><tr><td>적용계수</td><td>1.0</td><td>0.6 (0.8)</td><td>0.3 (0.8)</td></tr></table> ※ () : 해당 특허 및 실용신안이 도공기술마켓 등록기술인 경우 적용하며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인증기관 한국도로공사)” 상의 인증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 적용 ○ C: 특허 등록결정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특허, 실용신안은 존속기간 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특허, 실용신안은 존속기간 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각각 총 배점(0.6점)의 0.15점까지 인정 ○ 활용실적 인정 범위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특허 및 실용신안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도공기술마켓 등록기술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협의체가 발급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인증기관 한국도로공사)”를 추가 제출하여 평가 ※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인정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적용계수	1.0	0.9	0.8	0.7	0.6	0.5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6 (0.8)	0.3 (0.8)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적용계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적용계수	1.0	0.9	0.8	0.7	0.6	0.5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적용계수	1.0	0.6 (0.8)	0.3 (0.8)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입찰참여자 기술마켓 등록기술 활용 실적 우대방안 마련 (설계엔지니어링 중심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준용 (설계처, '26))																																																																																		
								평가기준 명확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세부 평가사항 제시)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점, 정량평가)		기술역량 (5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소계	(1.5점, 정량평가) / (1.0점 정성평가)																												
	4-3. 투자실적	0.4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A ○ 투자실적 <table><tr><td>투 자 실 적</td><td>1.50% 이상</td><td>1.50% 미만</td><td>1.25% 미만</td><td>1.00% 미만</td><td>0.75% 미만</td><td>0.50%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table>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조달청이 공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투자실적평가 적용 연도에 따른 최근 3개년에 대해 평가함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0.50%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0.5	0.6점 정량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A ○ 투자실적 <table><tr><td>투 자 실 적</td><td>1.50% 이상</td><td>1.50% 미만</td><td>1.25% 미만</td><td>1.00% 미만</td><td>0.75% 미만</td><td>0.50%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table>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조달청이 공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투자실적평가 적용 연도에 따른 최근 3개년에 대해 평가함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0.50%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0.5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0.50%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0.5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0.50%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0.5																														
< 신 설 >		< 신 설 >		4-4. 핵심기술인 현황	1.0점 정성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 과업과 직결되는 세부 전문분야 또는 경력 보유 핵심기술자의 보유현황과 강점 -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전문조직의 보유 현황(Pool)과 그에 대한 활용의 방법 및 절차																														
								감점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감점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기술역량 (5점)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1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당해과업과 관련한 유사경험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유사한 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회사의 강점, 보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 - 창의적 제안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기술역량 (5점)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당해과업과 관련한 유사경험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유사한 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회사의 강점, 보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 - 창의적 제안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6.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3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B+C)×0.1 ○ 적용계수(A)<table><tr><th>구분</th><th>상위 70% 이상</th><th>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th><th>상위 90% 미만</th></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85</td><td>0.7</td></tr></table>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우리공사(건설처 주관)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점수에 대한 등급별 비율로 평가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점수는 연도별 실적을 기준점수(최근 10년 평균값)로 환산하여 최종 산술평균 ※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우리공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한하며,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중간등급 부여 (A=0.85)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행 불성실 감점(B)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자(기술인 관리 불량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행 불성실, 임금보호방안 미준수 등) - 서면경고 1점/1회 감점 (최대 5점) ○ 교체빈도(C) -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으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료된 경우는 교체로 판단하지 않음		구분	상위 70% 이상	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		상위 90% 미만	적용계수(A)	1.0	0.85	0.7	6.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1.5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B×0.1) ○ 적용계수(A)<table><tr><th>구분</th><th>상위 70% 이상</th><th>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th><th>상위 90% 미만</th></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85</td><td>0.7</td></tr></table>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우리공사(건설처 주관)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점수에 대한 등급별 비율로 평가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점수는 연도별 실적을 기준점수(최근 10년 평균값)로 환산하여 최종 산술평균 ※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우리공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한하며,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중간등급 부여 (A=0.85)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행 불성실 감점(B)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자(기술인 관리 불량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행 불성실, 임금보호방안 미준수 등) - 서면경고 1점/1회 감점 (최대 5점) ○ < 삭제 >	구분	상위 70% 이상	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	상위 90% 미만	적용계수(A)
구분	상위 70% 이상	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	상위 90% 미만																		
적용계수(A)	1.0	0.85	0.7																		
구분	상위 70% 이상	상위 70% 미만 ~상위 90% 이상	상위 90% 미만																		
적용계수(A)	1.0	0.85	0.7																		
평가항목 삭제 (13. 직원 투입계획 (교체빈도) 항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배점 조정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3점)	7. 양적 평가 (주판사+공동참여자)	1.5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해당기간)의 건설사업 관리엔지니어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실적 ○ 실적금액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참여 지분율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a)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종류별 적용계수(β_i)) * β₁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 해당기간 내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일수/전체일수로 환산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인정 ○ 적용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실적금액 (억원)</td><td>100이상</td><td>~90이상</td><td>~80이상</td><td>~70이상</td><td>70미만</td></tr><tr><td>적용계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실적금액 (억원)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3점)	7. 양적 평가 (주판사+공동참여자)	2.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해당기간)의 건설사업 관리엔지니어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실적 ○ 실적금액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참여 지분율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a)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종류별 적용계수(β_i)) * β₁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 해당기간 내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일수/전체일수로 환산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인정 ○ 적용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d>실적금액 (억원)</td><td>100이상</td><td>~90이상</td><td>~80이상</td><td>~70이상</td><td>70미만</td></tr><tr><td>적용계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실적금액 (억원)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8. 질적 평가 (주판사+공동참여자)	1.5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최근 10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고려한 건설 사업관리엔지니어링 대표실적(공동수급 구성원별 2건)의 질적평가 - 유사실적별 발주청이 제시한 '유사성 판단기준'과의 부합 여부 평가 - 유사성 기준과 관련된 '대표적 성과'에 대한 평가	8. 질적 평가 (주판사+공동참여자)	1.0점 정성 평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실적금액 (억원)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실적금액 (억원)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사업수행 방법 (25점)	9.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9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과업수행단계별) 예상 문제점, 리스크 및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경험(설계엔지니어링 참여 등)을 기반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에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BIM 전면설계 건설사업의 경우 적용	사업수행 방법 (20점)	9.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10.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과업수행단계별) 예상 문제점, 리스크 및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 < 삭제 >	“2 사업목적 이해도 및 방법론” 배점 비중 단순조정 (“4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배점 비중 단순조정)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 (1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신설))
	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운영방법	6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 참여기술자 임금보호 방안		5.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 참여기술자 임금보호 방안		
	11.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5.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12. 작업계획	4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및 과업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12. 작업계획		소계	
					12-1. 작업계획의 적정성	3.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및 과업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자격, 경력, 직원역량, 인력투입 분포 및 S커브, 투입량 등) - 기술인 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평가항목 세분화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나찰제 심사기준 준용)
					12-2. 민원대응 및 안전 사고 관리능력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본사 지원 사항 필수 포함) - 작업현장 민원 식별 및 대응 체계 적정성 - 중대재해 등 작업현장 안전사고 관리 체계 및 사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적정성	
					12-3. 위기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1.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본사 지원 사항 필수 포함) - 대외적 요인(재난, 부도 등)으로 인한 위기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성·운영(위기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적정성 - 매뉴얼 및 교육훈련 체계, 외부기관과 협력 체계 등 적정성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평가항목 삭제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13. 직원투입 규모 및 전략	5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자격, 경력, 직원역량, 인력투입 분포 및 S커브, 투입량 등) - 기술인 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삭 제>		<삭 제>											
	14. 현장업무 수행직원 투입계획	1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 ≥ 0 ○ 현장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공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구 책임기술인은 만 60세, 책임 기술인 외는 만 5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12월)초과 당 0.2점씩 감점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13. 직원 투입계획 (교체빈도)		(5점, 정량평가)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 세부평가기준 준용)									
				13-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3.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A ○ 평가내용 -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table><tr><td>교체빈도율 (%)</td><td>5% 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tr><td>적용계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료된 경우는 교체로 판단하지 않음	교체빈도율 (%)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적용계수 (A)	1.0	0.9	0.8
교체빈도율 (%)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13-2. 참여기술인	2.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점수 ≥ 0 ○ 평가내용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엔지니어링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 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료된 경우는 교체로 판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안)			비 고
평가항목		배 점	심사항목		심사방법	
전문가 역량 (55점)	15.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 경력평가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전문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직무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 핵심전문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 범위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공사 및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35시간) ○ < 신 설 >	전문가 역량 (55점)	14.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 경력평가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전문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직무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일수를 양적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 핵심전문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 범위 - 기술자문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의 비상주부분은 참여실적에서 제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공사 및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해외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발주청(공통사항 참조)에서 시행한 도로의 국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 전 감리실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경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경력으로 인정 - 설계 관련 실적 중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35시간)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기술인 등급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인 등급이 해당 조건에 미달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양적평가를 “0”점 처리	기술인 등급 평가내용 구체화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배점기준 변경 (공구책임기술인 폐지) 사업책임기술인 검직에 따른 전문분야 및 전문분야외 인정범위 명확화 사업책임기술인 검직에 따른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제한																																	
전문가 역량 (55점)	15.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14.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15-1. 사업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경력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20년 이상</td><td>~18년 이상</td><td>~16년 이상</td><td>~14년 이상</td><td>14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u>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구 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14-1. 사업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경력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20년 이상</td><td>~18년 이상</td><td>~16년 이상</td><td>~14년 이상</td><td>14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u>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u> ※ 간접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직무분야 중 상기 명시된 전문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전문분야외”로 인정		구 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 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 (A)	1.0	0.9	0.8	0.7	0.6																																					
	구 분	20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4년 이상	14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직무	4점 (7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B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 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참여기간(월)= Σ{ 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α × β ₂ }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₂ : 사업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직무	3.0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B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 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참여기간(월)= Σ{ 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α × β ₂ }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₂ : 사업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td><td>1.0</td></tr><tr><td>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실시설계	1.0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교육 훈련	1점 (1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 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교육 훈련	1.0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배점 × 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 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Pass Fail	○ 사업 책임기술인 등급은 특급, 해당기술사가 없는 경우 양적평가 10점(15점) “0”점 처리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u>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술 자격	Pass Fail	○ 사업 책임기술인 등급은 특급, 해당기술사가 없는 경우 양적평가 8.0점 “0”점 처리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u>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u>																																					
* () : 공구 책임기술인을 제외하고 발주하는 경우 적용				* < 삭제 >																																							

현행				개 정(안)				비 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배점 조정						
전문가 역량 (55점)	15.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14.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공통사항> 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전문분야의 인정범위 명확화”							
	15-2. 분야별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11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6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text{배점} \times A)/n$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직무	4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text{배점} \times B)/n$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 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구 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기간(월)= $\Sigma\{\text{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times \alpha \times \beta_3\}$ * α :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_3 : 분야별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td><td>1.0</td></tr><tr><td>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8</td></tr><tr><td>타당성, 설계VE</td><td>0.6</td></tr></table>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1.0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8	타당성, 설계VE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1.0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8															
타당성, 설계VE	0.6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text{배점} \times C)/n$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 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 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text{배점} \times D)/n$														
		<table><tr><td>구 분</td><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적용계수(D)</td><td>1.0</td><td>0.6</td><td>0.2</td></tr></table>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 <신 설>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기술자격 인정분야 명확화	
--	--	--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전문가 역량 (55점)	15.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평가방법																			
				<공통사항> 참조																			
	15-3. 공구 책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5점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경력	2점 정량 평가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text{배점} \times A)/n)$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구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구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직무	2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text{배점} \times B)/n)$ - 직무평가 적용계수(B) <table><tr><td>구분</td><td>50개월 이상</td><td>~45개월 이상</td><td>~40개월 이상</td><td>~35개월 이상</td><td>35개월 미만</td></tr><tr><td>적용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직무분야(도로) 참여기간 - 참여기간(월)= $\Sigma\{\text{해당 직무분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times \alpha \times \beta_i\}$ * α: 도로 등급별 적용계수 ** β _i : 공구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별 적용계수 <table><tr><td>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td><td>1.0</td></tr><tr><td>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td><td>0.8</td></tr><tr><td>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td><td>0.6</td></tr></table>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1.0	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구분	50개월 이상	~45개월 이상	~40개월 이상	~35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적용계수(B)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관리·감독	1.0																						
실시설계, 시공, 시험, 검사, 기술자문	0.8																						
타당성, 기본설계,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0.6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text{배점} \times C)/n)$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td><td>1주 미만</td></tr><tr><td>적용계수(C)</td><td>1.0</td><td>0.9</td><td>0.8</td></tr></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미만																				
적용계수(C)	1.0	0.9	0.8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공구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Sigma(\text{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text{배점} \times D)/n)$ <table><tr><td>구분</td><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적용계수(D)</td><td>1.0</td><td>0.6</td><td>0.2</td></tr></table>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적용계수(D)	1.0	0.6	0.2																				
				< 삭제 >																			

현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전문가 역량 (55점)	14.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배점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총괄기술인 평가항목 신설					
		14-3. 안전 총괄기술인 양적평가	소계		4.0점			<공통사항> 참조				
			경력		2.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득점의 합				
								○ 경력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경력점수(배점×A) - 경력평가 적용계수(A)				
								<table><tr><td>구 분</td><td>12년 이상</td><td>~11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경력(년)=(전문분야 참여일수+ 전문분야외 참여일수×0.6) / 365일 - 기술인 직무분야별 전문분야 인정범위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직무	1.0점 정량 평가	○ 직무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직무점수(배점×B) - 직무평가 적용계수(B)										
교육 훈련	0.5점 정량 평가	○ 교육훈련 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교육점수(배점×C)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적 - 교육훈련 적용계수(C)										
기술 자격	0.5점 정량 평가	○ 안전총괄기술인의 등급은 고급 이상 - 기술자격 평가 득점 산출식: 평가대상기술인 자격점수(배점×D)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전문가 역량 (55점)	16.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14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 최신 공사·품질·안전 관리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경험(설계엔지니어링 참여 등)을 기반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에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BIM 전면설계 건설사업의 경우 적용	전문가 역량 (55점)	15. 핵심전문가 기술역량	6.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전문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 최신 공사·품질·안전 관리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 삭제 >	문구 수정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 (1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신설))
	17. 핵심전문가 인터뷰	15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16. 핵심전문가 인터뷰	소계	(25점, 정성평가)	
			16-1. 사업책임기술인 인터뷰	9.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16-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16-3.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16-4.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16-5. 안전총괄기술인 인터뷰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및 방법 - 정성평가 내용 전반 및 위원별 추가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스마트 건설기술 (5점)	17.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소계	(1점, 정량평가 / 4점, 정성평가)									
		17-1. BIM 전문인력 구성	1.0점 정량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									
				○ 전문인력 구성									
				<table><tr><td>BIM전문가 비율*</td><td>40%이상</td><td>35%이상</td><td>30%이상</td><td>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적용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BIM전문가 비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적용계수(A)	1.0
BIM전문가 비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적용계수(A)	1.0	0.9	0.8	0.7	0.6								
17-2.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	4.0점 정성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사업관리에 활용한 사례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특성 등을 고려한 활용 계획										
			- 활용 사례 : SOC분야(건축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하천 등 선형사업)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대표 1건(진행중인 사례 인정)										
			- 활용 계획 : 활용 경험 등을 통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 기법·창의적 아이디어·맞춤형 스마트 기술 등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문구 수정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사회적 책임	18. 인력고용 (가점)	+2점 정량 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최대 +2점) <table><tr><td>신규 고용율</td><td>1%이상</td><td>2%이상</td><td>3%이상</td></tr><tr><td>가 점</td><td>1.0</td><td>1.5</td><td>2.0</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 (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사회적 책임	18. 인력고용 (가점)	+1.0점 정량 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최대 +1점) <table><tr><td>신규 고용율</td><td>3%이상</td><td>2%이상</td><td>1%이상</td></tr><tr><td>가 점</td><td>1.0</td><td>0.8</td><td>0.6</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 (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신규 고용율	3%이상	2%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 신 설 >			19.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1.0점 정량 평가	○ 젊은기술인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최대 +1점) <table><tr><td>참여비율</td><td>5%이상</td><td>3%이상</td><td>1%이상</td></tr><tr><td>가 점</td><td>1.0</td><td>0.8</td><td>0.6</td></tr></table> - 참여 비율 = {Σ(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이 5년 미만 이거나 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기술인 수)/Σ(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35세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 미적용	참여비율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참여비율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1.0	0.8	0.6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사회적 책임	19. 공정거래 (감점)	-2점 정량 평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최대 -2점)	20. 공정거래 (감점)	-2점 정량 평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최대 -2점)							
			<table><tr><th>행위유형</th><th>조치정도</th></tr><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tr><td>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table> - 공정거래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함 -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도급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table><tr><th>행위유형</th><th>조치정도</th></tr><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tr><td>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table> - 공정거래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함 - < 삭제 >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도급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행위유형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문구 삭제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현행	개 정(안)				비 고						
	심사항목			심사방법	평가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계약 신뢰도	21. 중대한 건설사고	-0.5점 정량 평가	○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최대 - 0.5점) <table><tr><td>사고 발생건수</td><td>3건 이상</td><td>2건</td><td>1건</td></tr><tr><td>감 점</td><td>-0.5</td><td>-0.3</td><td>-0.1</td></tr></table> -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1년간 감점 조치 - 공동이행방식으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 각 업체의 사고 발생건수를 합산 * 중대한 건설사고 : ①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에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표시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 등재일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홈페이지(통합포털-자료실) 등재일 중 먼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조사 결과 그 원인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대상에 해당됨. 단, 사고조사 결과로 귀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 주관부서에서 감점 심사위원회(비리감점 심사위원회에 준함)를 구성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감점처리 한다.		사고 발생건수	3건 이상	2건	1건	감 점	-0.5
사고 발생건수	3건 이상	2건	1건								
감 점	-0.5	-0.3	-0.1								
< 신 설 >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심사항목		심사방법		감점항목 신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평가 관련 신뢰도	20. 평가관련 신뢰도 (감점)	-10점 정량 평가	○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2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10.0점 정량 평가	○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20-1.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td><td>당해평가</td></tr><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22-1.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td><td>당해평가</td></tr><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20-2. 제안서 작성 위반		○ 감점점수 ≤ 3.0점 ○ 감점항목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 : 1페이지당 0.1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등)] : 1페이지당 0.1점 -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0.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페이지당 0.1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페이지당 0.1점 ○ <신설>	22-2. 제안서 작성 위반		○ 감점점수 ≤ 3.0점 ○ 감점항목(정량평가 시)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 : 1장당(단면) 0.1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등)] : 1장당 0.1점 -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1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1점 ○ 감점항목(정성평가 시) <table><tr><th>감점사유</th><th>위반 횟수</th><th>감점</th></tr><tr><td rowspan="3">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td><td>1회</td><td>0.5점</td></tr><tr><td>2회</td><td>1.0점</td></tr><tr><td>3회 이상</td><td>2.0점</td></tr><tr><td rowspan="3">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td><td>1회</td><td>0.5점</td></tr><tr><td>2회</td><td>1.0점</td></tr><tr><td>3회 이상</td><td>2.0점</td></tr></table>	감점사유	위반 횟수	감점	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감점사유	위반 횟수	감점																														
1.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 수식어 사용시(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시)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2. 특정문구 반복 언급 등 표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	1회	0.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